

의안번호	2219826
의 퇴 인	송옥주의원
회 답 일	2026.8.24.
추계번호	26B349

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꿀벌질병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1억 8,000만원(연평균 3,6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꿀벌질병 조사사업 (안 제18조의3)	90	-	-	90	-	180	36

주: 본 추계결과는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산출한 것으로, 향후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 실시 여부,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I. 재정수반요인

연 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8조의2 (꿀벌질병관리 기본계획)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질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5년 마다 꿀벌질병관리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(제1 항)	의무규정
2	안 제18조의3 (꿀벌질병 조사 사업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꿀벌질병 조사사업을 실시해야 한다. (제1항) 조사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(제2항) 1. 매년 전국 질병 발생률, 폐사율, 원인 조사 2. 매년 월동봉군 피해조사 3. 3년을 주기로 한 꿀벌질병 실태조사	의무규정
3	안 제18조의4 (꿀벌질병 예찰 사업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꿀벌질병의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예찰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(제1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꿀벌질병 예찰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(제3항)	재량규정
4	안 제18조의5 (꿀벌질병 검사 기관의 지정)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질병의 검사 및 진단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꿀벌질병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(제 1항)	재량규정
5	안 제18조의6 (꿀벌질병 검사 비 지원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봉농가의 꿀벌질병검사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(제1항) 지원 대상, 지원 비율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(제2항)	재량규정 의무규정

6	안 제18조의7 (민관협력체계 구축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꿀벌질병의 효율적인 관리 및 검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민간기관, 대학, 연구기관 및 생산자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(제1항)	재량규정
	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(제2항)	
7	안 제18조의8 (표준진단체계의 구축)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질병의 정확한 진단 및 검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 표준 진단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.(제1항)	의무규정
	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단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정도관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(제3항)	재량규정
8	안 제18조의9 (꿀벌질병 정보 시스템)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질병정보의 수집·분석·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(제1항)	재량규정
9	안 제18조의 10 (조기경보 및 모니터링 체계)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질병의 발생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조기경보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(제1항)	재량규정
10	안 제18조의 11 (꿀벌질병관리센터)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질병의 예방, 조사, 연구 및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꿀벌질병관리센터를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다.(제1항)	재량규정
		꿀벌질병관리센터의 지정기준,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(제2항)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)
1	안 제18조의2 (꿀벌질병관리 기본계획)	—	·미대상 －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, 현행법 제5조 ¹⁾ 에 따라 수립되는 양봉산업의 육성 종합계획에 개정안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2	안 제18조의3 (꿀벌질병 조사사업)	○	·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및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
3	안 제18조의4 (꿀벌질병 예찰사업)	—	·미대상 －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,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7조 ²⁾ 에 따라 가축방역을 위한 예찰 등을 수행하는 가축방역관을 두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으며 꿀벌도 가축에 해당하므로, 개정안에 따른 별도의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미 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)
			인력 또는 업무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어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4	안 제18조의5 (꿀벌질병 검사기관의 지정)	—	·미대상 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,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12조제6항 ³⁾ 에 따라 가축의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갖춘 대학·민간연구소 등을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현행 제도에 따라 질병검사 비용도 지원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5	안 제18조의6 (꿀벌 질병 검사비 지원)		
6	안 제18조의7 (민관협력체계 구축)	—	·미대상 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, 양봉 질병 및 병해충 발생 대응 등을 위하여, 정부·지방자치단체·유관기관·학계·생산자 등 20인으로 구성된 「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한 협의체」가 이미 구성되어 운영 중이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7	안 제18조의8 (표준진단체계의 구축)	—	·미대상 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,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12조에 따라 꿀벌을 포함한 가축의 질병 표준진단 요령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8	안 제18조의9 (꿀벌질병 정보시스템)	—	·미대상 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,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3조의3 ⁴⁾ 에 따라 꿀벌 질병정보를 수집·분석·관리 및 활용할 수 있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운영 중이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9	안 제18조의 10 (조기경보 및 모니터링 체계)	—	·미대상 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, 현행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시행규칙 제3조 ⁵⁾ 및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17조 ⁶⁾ 에 따라 꿀벌질병의 발생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조기 경보하기 위한 예방협의체 운영 및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발령 등이 이미 시행되고 있으므로, 개정안에 따른 별도의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10	안 제18조의 11 (꿀벌질병관리센터)	×	·제3호 —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꿀벌질병의 예방·조사·연구 및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꿀벌질병관리센터를 지정 또는 설치하고, 해당 센터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미 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)
			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- 다만, 개정안은 꿀벌질병관리센터의 지정기준,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, 향후 지정 또는 설치할 센터의 수와 규모, 수행 업무의 범위,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, 국가의 지원 범위 및 지원 단가 등이 현시점에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
- 1) 제5조(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높이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
 2.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
 3.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
 4.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
 5.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
 6. 꿀벌의 보전·복원 및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
 7. 꿀벌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
 8.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·관리 방안
 9. 양봉 산물 및 부산물의 해외 수출전략 및 홍보방안
 10. 벌꿀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
 11. 지방자치단체의 양봉 관련 지원방안
 12.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·연구 및 지원계획
 13.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2) 제7조(가축방역관) ①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에 가축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관을 둔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은 수의사여야 한다.
- ③ 가축방역관은 가축전염병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, 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들어가 가축이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가축질병의 예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(試料)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다.
1. 가축시장·축산진흥대회장·경마장 등 가축이 모이는 장소
 2. 축사·부화장(孵化場)·종축장(種畜場) 등 가축사육시설
 3. 도축장·집유장(集乳場) 등 작업장
 4. 보관창고, 운송차량 등
- ④ 가축방역관이 제3항에 따라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및 예찰을 할 때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·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관의 가축방역관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하며, 검사, 예찰 및 사체 등의 처분 등 가축방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⑥ 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관을 두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방역관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적정 인원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3) 제12조(병성감정 등) ⑥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 소유자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을 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갖춘 대학, 민간 연구소 등을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- 4) 제3조의3(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가축방역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(이하 “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②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관계자 주소, 축산 관련 시설의 소재지 및 가축과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른 꿀벌 질병 표준진단체계 구축 및 조기경보·모니터링 등은 「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등에 따라 이미 실시되고 있으므로,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실시되는 꿀벌질병 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만을 추계함
- 본 개정안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연구용역을 통해 3년마다 꿀벌질병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가정함
 - 개정안에서는 매년 전국의 질병 발생률·폐사율 및 원인 조사와 월동봉군 피해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행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시행령 제4조제2항⁷⁾에 따른 수시조사의 일환으로 해당 조사를 이미 매년 실시하고 있으므로, 개정안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본 추계에서 제외함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개정안 부칙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
- 그 생산물의 이동 현황 등에 대하여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을 명할 수 있다.
- 5) 제3조(가축전염병 예찰)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및 특별자치시장·시장(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)·군수·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3조제1항제1호·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고, 신속한 방역조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관한 예찰(豫察)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찰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실시방법과 예찰결과에 따른 방역조치에 관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축산관련단체 및 축산관련기업의 대표, 가축방역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④가축전염병에 관한 예찰의 방법·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.
- 6) 제17조(가축전염병 발생정보 발령) ① 가축전염병의 전파·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본부장 및 시·도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전염병 예찰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정보를 발령할 수 있다.
- 7) 제4조(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)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.
1. 정기조사: 5년마다 실시하되,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실시
 2. 수시조사: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꿀벌질병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,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농림축산식품부 의견에 따라 본 추계에서는 꿀벌질병 실태조사의 취지와 내용을 고려하여, 유사 연구용역 사례인 ‘양봉산업 현황 실태조사 용역’을 참고하여 소요비용을 추계함
 -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‘양봉산업 현황 실태조사 용역’에 9,0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, 꿀벌 질병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
[표 2] 유사사례 관련 주요내용

(단위: 백만원)

과제명	수행기관	수행기간	계약금액	주요내용
양봉산업 현황 실태조사 용역	지역농업 네트워크 강원 협동조합	2026.4.~ 2026.12.	90	·꿀벌의 종류별·형태별 양봉농가 현황 ·양봉관련 생산량 및 생산액 현황 ·양봉산물·부산물별 생산업체 유통업체의 현황 ·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꿀벌 피해 현황 등 조사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

-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추계 첫해인 2027년에 실시하고 추계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며, 수립주기는 개정안에 따라 3년으로 가정함
-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꿀벌질병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1억 8,000만원(연평균 3,6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꿀벌질병 조사사업 (안 제18조의3)	90	-	-	90	-	180	36

주: 본 추계결과는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산출한 것으로, 향후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 실시 여부,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결과는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산출한 것으로, 향후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 실시 여부,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예승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assembly.go.kr